『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선정 공고(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내 기업 체감 효율을 높이고자 신청 요건을 완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 및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선정 규모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3개 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개 선정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참여 등 도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경남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2 신청 대상

- O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u>경상남도 내에 주소</u>를 두고 <u>중소기업 1개사 이상</u> (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 2024. 1. 1. ~ 12. 31.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하단의'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 완전자본 잠식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지정신청일 현재 기준)
- 산업재해, 임금 체불, 환경파괴, 각종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업
- 사행성·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 및 도·소매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등 영위기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지원 제외)
- 제조업(또는 서비스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3 지원 내용

항목	지원 세부내용
환경개선*, 홍보, 제품개발, 사회적 가치 지원	 ○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1회 한정, 최대 1천4백만원*^{부가세 제외}) - 사무실, 기숙사, 휴게실, 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외부(천장, 벽면 등)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 간접비용(부지건물 매입비, 임차료 등), 소모성 집기 및 소모품은 지원 대상 제외 - 기업 홈페이지 제작, 광고 홍보 - 시제품, 금형, 디자인 개발, 특허 권리화 등록 -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지원 한도 하향될 수 있음

* 기존 환경개선 목적의 사업을 정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및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경우 동일 항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함(추후 검증 예정이며,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지정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2. 28.(금) 09:00부터 3. 28.(금) 18:00까지
- O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본관동 4층)

- ※ 접수시간은 <u>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u>이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yun21@giba.or.kr ※ 발송 후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요약자료(서식2)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사후관리 동의서(서식3) 1부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 보고서(서식4) 1부
 - 기타 첨부서류 ※ [서식1]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신청서 하단 목록 참조
- 문 의 처 : 경남도청 경제기업과(☎ 055-211-3323)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7)

5 선정 및 심사

O 선정절차

공고·접수	요건 검토		실적 검토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인센티브 지원
2.28~3.28	3.31~4.15	-	4.16~4.30	5월 중	-	6월~

- ※ 약정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만 실적 검토
- 선정방식 : 서면심사(1차 요건 검토 → 2차 실적 검토)
 - 정량평가(65점) +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
 - ▶ 정량평가(65점): '24년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시작비율
 - ▶ 정성평가(35점) : '24년 조정 횟수, 최초계약 여부, '25년 확대 도입계획
 - ▶ 가점(10점): '24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 여부(원재료 등이 납품대금의 5% 이상~10% 미만인 경우 연동제 적용 여부),
 '24년 적용 확대 여부(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스비, 전기료) 중 1개 이상 확대 실시 여부)

78	정량평가				정성평가	별도 가점		
구분 총점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비율	조정횟수	최초 계약여부	확대 도입계획	경남형 실시여부	적용 확대여부
100	25	20	20	15	10	10	5	5

- 선정위원회 최종심의 선정
 - ※ 동점자 발생 시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시작비율 순으로 선발
- O 최종 심사 및 선정(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 5월 중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or.kr)에 선정 결과 공고

6 유의 사항

- 각종 변경 사항(상호명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전환, 합병 등) 발생 시 변경 신청 필요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신청서(서식) 접수 후 변경된 사항 경상남도와 공유
- O 아래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즉시 취소 사유)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임금체불, 각종 법률 위반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 폐업 기업,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매년 1회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중단 여부가 발견될 시 환수 조치 예정

【서식 1】 **서식 작성**

2025년 경남형 납품내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시업 신청서

업체명		ΓU π TL					홈페이지					
입	세 병		대표자				E-mail 주:	<u></u>				
	등록번호 다등록일)				업 종 (한 대 준산업분류)			()	
	록번호 립등기일)				설립일자/업력		년	월	Ç	일/	년	월
소재지		(우 -)								전화번호	<u>5</u> :	
고세스	공장	(우 -)								전화번호	<u>5</u> :	
T. III. I II				ᄉ다기어			약정	체길	결 기업 수			
주생산품			수탁기업			총 () 기	! 사			
담당 부서		서		성명		E-mail			연락처			
신성	담당자											
제출하	하며, 수	남형 납품대금 :탁기업에 해당 류에 허위가 없·	사실을	잍	날리고 동의 범							
					2025년		월	Ç	일			
				신청인(대표) : (연			(인)					
경	상남도	드지사 귀하										
점 부 부 서 류 8	부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서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 1부											

【서식 2】서식 작성

2025년 경남형 납품내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시업 요약지료

구 분			해당연도		증빙자료
	ТЕ	<u>2021년</u>	<u>2022년</u>	<u>2023년</u>	중당시표
	매출액				예) 표준재무제표 OO페이지
재무	당기순이익				"
현황 (단위:	총자산				"
(는 H: 백만원)	자본총계				"
	부채총계				n
근로자 현황	상시근로자수 (연도말)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수탁 기업	수탁기업 개수	총 () 개사	예)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보고서 참조
거래 금액	연동제 적용 거래 금액	총 () 원	예)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보고서 참조
연동 시작 비율	비율 기재	()	%	예)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보고서 참조
조정 횟수	납품대금 조정 횟수	총	() 회	예)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보고서 참조
최초 계약 여부	연동제 최초 계약여부		0 /	X	해당 항목 체크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여부	원재료 등이 납품대금의 5%인 경우 연동제 여부		0 /	X	해당 항목 체크, 별도 증빙자료 참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여부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 중 1개 이상 확대 여부		0 /	X	해당 항목 체크, 별도 증빙자료 참조

2025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서식 3】서식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사후관리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추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 기업 신용정보(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사업장, 판매 상황, 주요 거래처, 재무 상황, 사업계획 (제품 판매 계획 및 시설 투자계획 등) 및 권리침해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 기업 신용정보(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재무상황, 사업계획(판매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등) 및 권리침해 현황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u>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종료시까지</u>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사후관리 조사에 대한 동의
□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 조사 항목 - 업체 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휴·폐업 여부, 타 시도 이전 여부 등)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고용인원, 매출액 증가 현황, 대표자 변경 등 신고 여부) □ 귀하는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등 업체 사후관리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사업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기 업 명 : □ 연 락 처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이)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4】서식 작성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 보고서

1. 추진목적

사업	참여	목적	및	배경
 	ш ,	- 1		11 0

○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목적 및 배경을 간략하게 기재

_

2. 기업현황 소개

□ 위탁기업 현황

- (사업내용, 주요 생산·거래 품목, 주요 거래처 등)
 - 사업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최대 3페이지 이내)

□ 연동제 운영 현황

○ 시행 실적에 대한 내용(협약을 맺은 수탁기업과의 계약 형태, 운영 규모, 기간, 횟수, 수탁기업 사업내용 등 기재)

-

3. 세부 운영결과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 (약정을 체결한 ()개사에게 총()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기재)

-

□ 거래단계별 협약체결 현황

- 1단계 : ()개사*(*위탁기업 @ → 1단계 수탁기업)*
- 2단계 이상: ()개사*(*위탁기업 @→ 1단계 ⓑ→ 2단계 수탁 ⓒ)*
- □ 하위 2단계(@~©)이상 약정체결의 경우, 1단계 ⓑ→ 2단계 ⓒ 수탁기업의 별도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추가로 제출 요망

□ 연동제 적용 실적이 있는 수탁기업 수 및 거래 규모

○ (수탁기업명, 계약금액, 수·위탁거래 대상 물품 등을 기재)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수탁·위탁 거래대상 물품명	연동 원자재	원재료등이 납품대금의 5%인 경우 적용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확대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	수탁기업 중소기업 여부 (소재지)
				ex) (), X	ex) 재료비 (재료명칭)	ex)
					ex) 노무비	중소기업 (경상남도)
					ex) 전기료	(00日工)

4. 향후계획

○ 향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가 참여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5】

※ 위·수탁기업 상호 날인본 제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주요 원재료'란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7.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①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4조(납품대금 연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첨부1】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 (별첨)」(이하 '「별첨」'이라 한다)에 따라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⑥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④ 「별첨」은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서식 6】

※ 위·수탁기업 상호 날인본 제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납품단가 변동표

-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기* :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